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19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박상혁 · 허 영 · 김우영

정준호 · 이해식 · 한민수

진선미 · 김한규 · 최혁진

문정복 · 박지원 · 김영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제64조의2제1항).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실제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및 IT 기업들은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와 매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금번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수천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어도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숨방망이’ 수준에 그쳐, 기업들이 보안 투자보다 과징금 납부를 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실정임.

반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4%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 관련성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기업에게 지우거나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생략)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 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u><삭 제></u>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 ----- ----- ----- -----제 출한 경우에는 해당----- ----- ----- ----- ----- ----- -----.
④ ~ ⑩ (생략)	④ ~ ⑩ (현행과 같음)